
보험대리점 우수인증설계사 세부기준

2018. 01. 10

(사)한국보험대리점협회

I 도입목적

보험설계사들의 자질향상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근속기간, 계약 유지율, 완전판매 여부 등의 우수한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보험업계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

II 자격기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용대상 | -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|
| 근속기간 | - 동일회사에 근속기간 3년 이상 재직자 |
| 유지율 | - 생·손보 합산 13회차 통산 90% 이상 |
| 소득 | - 연소득 4,000만원 이상 |
| 기 타 | -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위반 없음 |

III**세부일정**

1. 인증신청자 접수기간: 2018년 2월19일(월) ~ 3월2일(금)
2. 인증신청자 등록신청: 2018년 3월5일(월) ~ 3월9일(금)
3. 신청자 심사: 2018년 3월5일(월) ~ 3월21일(수)
4. 인증자 확정 및 개시: 2018년 4월2일(월)

IV**신청방법**

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해당 설계사는 신청서 및 서약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보험대리점에 접수하며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대리점협회로 일괄 신청함

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

제정 2018. 1. 10

제1조(목적)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고취 및 보험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가 인증하는 “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우수인증설계사)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라 함은 근속기간, 보험계약 유지율, 연간실적, 완전판매 등과 관련하여 협회 회장(이하 “협회장” 이라 한다)이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동일회사 3년이상 재직자
2. 생·손보 합산 13회차 90%이상
3. 연소득 4,000만원 이상
4.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위반 없음

제3조(인증신청) ①대리점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증 신청서 <서식 제1호>
2. 대표이사 확인서 <서식 제2호>
3. 신청자 현황

③대리점은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<서식 제3호>의 서약서를 신청일로

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인증신청시기, 신청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.

제4조(인증의 심사) 협회장은 인증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증의 효력) ①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.

1.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
2. 지점 및 지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6조(인증의 취소) ①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1.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
2.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
3.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행위를 한 때

②대리점은 우수인증설계사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수인증설계사의 명단(보험설계사 등록번호)과 인증취소사유 및 인증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협회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우수인증설계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부여) ①우수인증설계사는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증권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.

②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홍보, 포상,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

전개할 수 있다.

③협회장은 인증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우수 인증설계사와 차별화된 등급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 지점 및 지사에 대한 인증신청 금지) ①공정한

인증관리를 위하여 협회장은 보험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지점 및 지사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나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지점 및 지사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장질서 문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화권유와 설명회 등의 방법 및 인쇄물, 이메일, 문자메세지 등의 유포로 다른 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를 집단적으로 유인하는 행위
2. 그 밖에 보험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

③협회장이 대리점에 대해 인증신청 금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9조(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) ①보험설계사가 협회 인증을 받지

아니하고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인증신청을 당해로부터 2년간 금지한다.

②대리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.

③협회장은 인증도용자 및 허위신청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대리점의 협조의무) ①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 또는 검증을 위해

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②대리점이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대리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11조(세부 시행 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.

부 칙 (2018. 1. 10. 제정)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제1호]

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신청서

「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」 제3조에 따라
귀 협회에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의 인증을 첨부와 같이
신청합니다.

첨부 : 1. 대표이사 확인서 1부
2.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신청자 현황 1부. 끝.

년 월 일

대리점명:

대표이사:

(직인)

[서식 제2호]

대표이사 확인서

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귀하

우리 대리점에서 인증을 신청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의 제2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이사:

성명:

(서명)

대리점명:

[서식 제3호]

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신청자 서약서

0000대리점 귀중

본인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신청을 함에 있어 「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」을 준수합니다. 현 소속대리점에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인증이 자동 소멸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【 동의함 동의안함】

또한, 귀 대리점은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, 제공 및 조회와 관련하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및 이력관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식별정보(소속대리점, 소속지점 및 지사, 성명(영문 포함), 설계사 등록번호, 사진)와 인증관련정보(위촉일자, 유지율, 연소득, 휴대폰번호 등)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제공하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동 목적 달성 시 까지 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【 동의함 동의안함】

※ 귀하는 상기 각각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